

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. 9. 27 선고 2015가단6318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론 종결 2016. 9. 6.

판결 선고 2016. 9. 2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경상남도 고성군 C 대 313㎡ 중 별지 감정도 표시 8, 9, 10, 11, 12, 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32㎡ 지상의 담장을 철거하고, 그 대지를 인도하며,
나. 경상남도 고성군 C 대 313㎡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3, 14, 15, 16, 1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(다) 부분 8㎡ 지상 블록조 양철판넬지붕 단층창고를 철거하고, 그 대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(2016. 8. 23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주문 1.나.항의 인도청구 부분이

누락되어 있으나, 그동안의 변론경과에 비추어 이는 착오로 보이므로,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).

이 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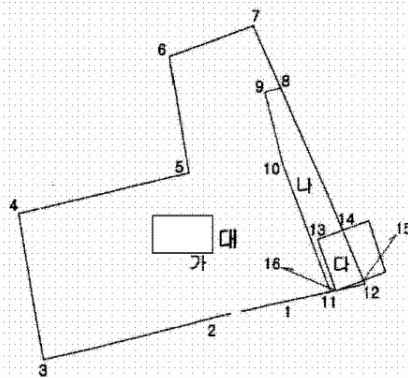
원고는 경남 고성군 C 대 313㎡의 소유자이고, 피고는 이에 인접한 D 대 179㎡의 소유자인데, 피고 소유의 담장 및 창고건물이 원고 소유 토지를 일부씩 침범하고 있으므로, 그 침범 부분 축조물에 대하여 철거를 구하고, 그 대지의 인도를 구함.

판사 박현진

감 정 도

경상남도 고성군

범 례	명 칭
———	지적선
———	현황선
———	건물외벽선



토 지		구 분		
지 번	부 호	순 번	면 적	비 고
	가	1~11, 1을 차례로 연결	281㎡	원고점유
	나	8~12, 8을 차례로 연결	32㎡	피고점유
	다	13~16, 13을 차례로 연결	8㎡	불간항석 창고건물

감정일 : 2016년 7월 20일

감정인 : 지적기사

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지역본부 고성지사

